

조문별 제·개정 이유서

1.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 공표 대상 확대(안 제10조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시 중대재해에 해당되나, 공표 기준은 2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중대재해 개념과의 적합성 제고 필요

나. 제·개정 내용

- 공표 대상 사업장 기준 중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“연간 2명 이상 발생”에서 “연간 1명 이상 발생”으로 강화
- 중복 공표를 방지하기 위해 제10조제1항제2호(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)는 삭제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특이사항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산재 발생 기업에 대한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, 기업의 산재 예방에 대한 책임을 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2. PSM 대상에 ‘리튬전지 제조업’ 포함(안 제43조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화재·폭발 및 인명피해 위험이 높은 리튬-염화티오닐 일차전지 제조업을 공정안전관리(PSM) 대상에 포함하여 화재·폭발 사고 예방체계 구축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공정안전보고서(PSM) 제출 대상에 “일차전지 제조업 중 염화티오닐을 전해액으로 사용하여 리튬전지를 제조하는 제조업” 추가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화재·폭발 및 이로 인한 산업재해 예방에 기여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3. 안전보건교육 적용 제외 규정 정비(안 별표 1)

가. 제·개정 이유

- '20.1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시 안전보건교육 관련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는 “전문서비스업”이 “기타 전문서비스업”으로 개정되어 해석에 혼란 발생

나. 제·개정 내용

- “기타 전문서비스업”을 “전문서비스업”으로 변경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교육의무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4. 안전보건교육기관 등 강의시간 주기 변경(안 별표 10, 12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근로자의 정기교육 주기가 “분기” 단위에서 “반기” 단위로 변경됨에 따라
(‘23.9월,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별표 4] 개정)
-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등록기준 중 기본 인력
(총괄책임자 1명, 강사 2명)에 대한 강의시간 주기에도 반영 필요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근로자안전보건교육기관 및 직무교육기관의 기본인력에 대한 강의시간
주기를 “분기별 12시간”에서 “반기별 24시간”으로 변경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교육주기 불일치 문제 등을 개선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

5. 조문 정비(안 별표 35)

가. 제 · 개정 이유

- 인용 조문 개정 사항 반영

나. 제 · 개정 내용

- 시행령 [별표 35(과태료의 부과기준)]의 4. 개별기준 내 위반행위 ‘초목’상 조문 수정(‘오목’에 해당하는 경우 → ‘조목’)

다.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

- 해당 없음

라. 입법효과

- 오타 정비를 통한 현장의 혼란 해소

마. 그 밖의 참고사항

- 해당 없음